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 10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해도 제고”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 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및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요 질의응답은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하루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늘리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붙임. 개정 「방송법 시행령」 주요 질의응답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2-2110-1270)
		담당자	사무관	조현웅 (02-2110-1264)

- ① 일총량 산정 기준이 기존처럼 프로그램당 비율의 평균인지? 전체 방송시간 대비 광고시간인지?
 -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송출된 방송시간 대비 하루 노출되는 광고 시간의 비율을 20% 이하로 충족하면 됩니다.
- ② 일총량 산정 시 1일 방송시간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 일총량 산정은 각 채널별 방송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정파시간) 까지 실제 송출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주시청시간대 광고 총량 산정 기준은?
 - 주시청시간대 노출되는 광고의 총량을 방송시간 대비 20% 이하로 충족하면 됩니다.
 - 평일 주시청시간대(19~23시)는 48분(=240분*20%), 토·일·공휴일 주시청 시간대(18~23시)는 60분(=300분*20%) 광고 가능
- ④ 주시청시간대 경계에 편성되는 광고의 별도 총량 포함 여부는?
 - 실제 광고가 배치된 시점 기준으로 별도 총량 산정에 포함합니다.
 - ※ (예시) 22:59:50 초에 시작하는 15초짜리 광고의 경우 10초만 포함
- ⑤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산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시간 기준은?
 - 실제 본편 방송시간(RT)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중간광고 시간은 포함하고 전·후CM, 필러 등은 제외합니다(기존 기준과 동일).
- ⑥ 경제 관련 정보 프로그램에도 가상광고가 허용되는지?
 - 경제 관련 정보 프로그램은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가상광고가 가능합니다.